

대체부품 성능·품질의 인증 등에 관한 표준업무규정

제정 2014.12.26.
개정 2015.11.12.
개정 2016.04.22.
개정 2016.11.14.
개정 2017.01.19.
개정 2017.04.13.
개정 2017.06.14.
개정 2017.12.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라 한다) 제20조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인증(이하“품질인증”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이하“업무규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체부품인증기관”이란 고시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인증기관”이라 한다)
2. “대체부품시험기관”이란 고시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시험기관을 말한다.
(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
3. “인증심사”라 함은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시험을 말한다.
4. “인증표시”라 함은 인증심사를 완료한 인증부품에 인증셀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인증부품”이란 품질인증을 받은 부품을 말한다.
6. “외장부품”이란 차량 외부에 장착되는 부품으로서 외부에 나타나는 외관형태 및 공기저항, 쿨링성능, 소음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
7. “등화부품”이란 야간에 지형지물에 대한 인식, 방향지시, 경고 등을 위해서 전방 및 후방에 설치하는 부품
8. “기능성 부품”이란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및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모든 부품
9. “소모성 부품”이란 운전자가 교체주기를 준수하여 교환함으로써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부품
10. “제조사 부품”이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

제2장 대체부품 시험기관

제3조 (시험 기관 협약) ① 고시 제13조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에 대한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향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협약체결 의향서를 받은 경우 제 5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항에 요건에 적합하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 (시험 기관의 협약취소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시험 (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수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험기관의 협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기관 협약을 체결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수행한 경우
 3. 기타 시험기관으로서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90일 이내에 한하여 시험기관과의 협약 효력을 중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시험을 거부한 경우
 2. 별표 1의 시험기관요건에 부적합하게 운영할 경우

제3장 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2항의 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정비업계, 소비자단체, 학계 및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되, 인증기관 소속 이외의 외부위원이 각 기관별 1인 이상이 되도록 품질인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 인증기관, 보험개발원과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된 품질인증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의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운영위원회와 심사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서 명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정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3.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인증기관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4. 위원회의 심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서약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인증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전통보 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3. 위원이 정당한 이유를 표명하고 해촉을 원하는 경우
-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최종해석에 관한 사항
 2. 이의 또는 불만처리의 최종해석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증시험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에 의한 시험기관의 협약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인증부품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의한 수수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6 조 (대체부품 인증대상 등)** ① 고시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은 별표 5과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대상에 대한 인증부품 시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4장 인증심사

- 제7조 (인증심사의 절차)**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인증심사 신청을 한때에는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시험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이미 심사를 받는 등 별도의 서류심사와 공장심사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제외 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은 인증심사를 받은 제품의 재질 및 규격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이 인증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온라인(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품질인증의 절차를 누구나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8조 (서류심사)** ① 신청인은 서류심사를 위해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체부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증신청업체 설명서
 2. 인증신청부품 관련 제원
 3.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해외업체의 경우 공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등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해당 시 제출)
 5.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6. 국내외 인증부품 품질인증기관 인증실적 및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7. KS,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실적 및 증빙자료 (해당 시 제출)
 8.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의한 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공장심사)**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8조에 의한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공장심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서류심사 시 제출된 해당항목이 포함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정 및 품질관리현황

- 2. 기술수준 및 생산기술 혁신성
- 3.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 4.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 5.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심사위원 중 2인 이상으로 하여금 제9조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참고하여, 별표3의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심사를 실시할 경우 공장심사 7일 이전에 심사일정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의한 심사결과가 별표3의 공장심사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 11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인증시험)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9조에 의한 공장심사에 합격한 경우 제3조의 시험기관에 인증시험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인은 시험기관과 협의하여 시료 등을 시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인증시험 실시를 통보받은 시험기관은 별표 6에서 정한 인증시험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 인증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합격한 것으로 하여 인증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 1. 등화장치의 경우는 국제기준(UN기준)에 의한 "E"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신청인이 시험 성적서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를 시험기관(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할 경우
- 2. 외장부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대체부품인증기관(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이하 'CAPA'라 한다)의 인증마크가 표시되어 있고, CAPA의 시험성적서를 시험기관에 제출할 경우
- ③ 시험기관은 불합격 등 재시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험항목 등을 신청인과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시험기관은 시험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험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 서식의 인증시험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고시 제16조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한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직접인증시험을 실시하거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자동차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을 활용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 인증신청자와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된 기관의 장은 동일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⑥ 기능성·소모성 부품의 경우, 자동차 제작사별, 차명별, 사용 연료별(휘발유, 경유 등)로 구분하여 인증시험을 진행한다.

⑦ 특정 제작사가 시험기관에 신청한 제작사 부품(OEM) 시료의 시험결과는 다른 특정 제작사에 제공되어 동일한 시료의 시험이 면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특정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험기관은 해당 시료의 시험성적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별표6 자동차부품 성능·품질 인증시험 기준 및 방법 등에서 시험기준 등을 “제조사 부품 대비 95%이상(또는 ±5% 이하)”으로 규정한 경우 해당 인증신청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을 30회 실시한 이후에는 그 결과의 평균값을 시험기준 등으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인증서의 교부

제11조 (인증서의 교부)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에 합격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의 대체부품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은 인증서를 발급받기 전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 서약서 및 대체부품 인증신청자 자체 서식에 의한 대체부품 생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에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서의 재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품질인증을 받은 자 또는 인증부품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이미 교부받은 인증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1.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 2. 인증부품의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재발급 한다.

제13조 (인증유효기간)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 12호 서식의 대체부품 인증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제17조에서 정한 인증의 취소사유 등이 없는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증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제6장 인증표시

제14조 (인증표시의 사용 등)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 제품에 부착할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인증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요건을 확인 후 인증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인증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인증표만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별표 4의 제1호에 따라 인증표를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 별표 4의 제2호 따른 인증로고는 인증부품 포장재, 서류, 홍보자료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증로고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홍보 및 광고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장 사후관리

제15조 (인증부품의 관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 11조에 따라 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증번호, 인증표 번호, 부품명, 부품번호, 발행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의 생산, 공급 및 사용 등을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제 1항의 인증번호와 인증표 번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 등이 발행한 경우 인증부품의 회수 또는 수리 등을 위해 홈페이지 또는 언론 등에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의 결함 또는 하자로 인한 인증부품의 회수 또는 수리 등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 할 수 있도록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3%를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된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인증오류에 따라 발생한 손해 배상
2. 대체부품제조사가 손해배상 능력이 없거나 폐업 또는 도산 등으로 손해배상이 곤란한 경우
3.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인증부품의 점검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점검은 매년 1회 제 9조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인증부품시험 절차와 관련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때 인증부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인증시험을 실시 할 수 있다.

2. 수시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부품을 임의로 구매하여, 제 10조의 인증시험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때 인증부품의 대상 및 시험항목 등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인증부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소비자 불만, 분쟁 등이 발생하여 품질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9조의 공장심사 또는 제 10조의 인증시험 절차에 준하여 실시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요구 시 인증기관의 장은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언제든지 열람에 응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 1항에 따른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 7일 전에 그 사실을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조사 및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점검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 3조에 의한 시험기관 또는 인증부품을 시험할 수 있는 시험시설을 갖춘 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해 인증부품의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제17조 (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가. 제14조 제3항의 「인증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나. 제16조에 의한 인증부품의 점검 결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 인증부품에 결함이 발견된 경우

라.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해당 제작자에게 통보 및 인증기관의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한다.

가.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나. 인증부품에 결함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 다. 휴업·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 라.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 마. 인증부품 인증내용과 다르게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 바. 제16조에 의한 인증부품의 점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 사. 제 1항 제 1호에 의한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 아.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 1항에 의한 인증부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이 인증부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③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다. 인증취소 품목의 인증절차는 제4장의 인증심사절차에 따른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의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부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인증기관의 장이 지정한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이의신청) ① 품질인증 또는 인증의 취소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인증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를 6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보서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재시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이의신청 사실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6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정당하지 못한 불만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신고내용은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불만사항을 통보받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제5조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8장 수수료 등

제19조 (수수료의 납부)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정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자에게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제8조에 의한 서류심사
 2. 제9조에 의한 공장심사
 3. 제14조에 의한 인증실 발행
 4. 제10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제출된 시험성적서와 인증 신청부품의 동일성 확인
 5. 제16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
 6. 제18조에 의한 이의신청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0조에 의한 인증시험 수수료는 시험기관에서 정한 수수료(시료 등 시험기관에 제출하는 제반시험 관련자재는 별도임)를 시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품질인증을 받고자하는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은 신청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기타사항) ① 인증기관의 장은 본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따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업무규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대체부품 시험기관 요건

1. 수행 및 인력조건

1)인증대상 품목별로 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는 시험설비를 보유할 것. 다만, 별표 5 제2호의 등화부품, 제3호의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에 대한 인증시험 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이를 확보한 자와 시설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험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필요한 경우 제5조 제2항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시설사용협약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2)인증부품 시험업무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는 조직, 업무분장 및 관련 규정 등을 갖추고 대체부품 사용활성화를 위한 연구 및 개발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 KS / ISO 등에 의한 제품인증 또는 품질시스템 인증심사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에서 품질관리 또는 자동차관련분야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품질관리기사 1급 또는 자동차산업기사 1급 자격을 갖추고,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인증기관장이 관련분야 종사자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시설조건

가. 외장부품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만능시험기 (Universal Test Machine)	- 최대하중 : 50kN - 시험속도 : 0.001 ~ 500mm/min - 분해능 : 0.0001mm - 정확도 : ±0.01mm
2	충격시험기 (Izod Impact Tester)	- 시험능력 : 2.75J(이상) - 낙하높이 : 0.61m
3	열기계분석기 (Thermomechanical Analysis)	- 최대온도 : 1000℃ - 가열속도 : 100℃/min. - 냉각속도 : 1000℃→50℃, 15min.
4	듀폰식 충격장치 (Dupont Impact Tester)	- 최대높이 : 500mm - 낙하충량 : 300, 500, 1000g - 낙하단위 : 50mm
5	온도 챔버장치 (Constant Temperature Chamber)	- 온도범위 : -35 ~ 120℃ - 정확도 : ±1℃ - 유지성능 : ±1℃
6	염수분무장치 (Salt Spray Tester)	- 온도범위 : 표준온도~50℃(분무실) - 시험방식 : 중성 염수 분무 시험 및 CASS시험
7	광학현미경 (Metallurgical Microscope)	- 최대배율 : 500배 - 카메라 및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
8	디지털 계측도구	- 디지털 버니어 캘리퍼스 - 디지털 마이크로미터 - 디지털 줄자 - 틸트 게이지 등
9	시험편 제작장치	- 시험편 제작에 적합한 CNC밀링머신
10	휴대용성분분석기	- X-ray 성분분석을 통해 아연 함량 측정

가-1. 사이드미러(좌·우)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전압계 및 전류계	- 전압 (DC Max. 24 V), 정밀도 ± 0.3 % 이상 - 전류 : 정밀도 ± 0.5 % 이상
2	토크시험기	- 정밀도 ± 2.0 % 이상
3	회전속도계	- 회전속도 측정 (접촉식 & 비접촉식) - 정밀도 ± 1.0 % 이상
4	푸쉬풀 게이지	- 최대범위 : (1~300) N - 분해능: 1 N
5	진동시험기	- Max. Load : 350 kg, - pk~pk : 50.8 mm - Sine force, peak : 17.8 kN - Acceleration : 125.0 gn
6	염수분무 시험기	- 분무실 크기 : (900×600×450) mm - 분무실 온도 : (30~40) °C - 포화온 온도 : (30~70) °C
7	살수시험기	- 압력계, 회전판, 살수노즐 등
8	분진시험기	- 최대분진(mg/m³) : 100, 3 000, 60 000 - 온도 : (20 ± 15) °C - 습도 : 45 % RH ~ 85 % RH
9	구속내구시험기	- 정밀도 ± 2.0 % 이상
10	전자파시험기	- 범위 : 100 kHz ~ 3 GHz, 0.3 V/m ~ 300 V/m - 정밀도 : 정밀도 ± 0.5 % 이상

나. 등화부품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회전가대 (Gonio Meter)	작동범위 : 연직면±30°이상, 수평면±90°이상
2	조도계 (Illuminance Meter)	KS C 1601(조도계) 일반형 A급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일 것
3	색도계 (Colorimeter)	분광측색방법 또는 자극치 직독방법으로 측정 가능할 것
4	암실 (Darkroom)	난반사를 차단할 수 있을 것
5	프로그램 (Program)	대체부품 인증기준에 따라 시험할 수 있을 것

다. 기능성·소모성 부품

다-1. 물 펌프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내구성시험기	- 구동모터 : Min. 6 000 rpm 이상 (속도제어가능) - 히터 : 유체온도조절 (~100 °C) - 가압기 : Min. 0.5 MPa - 압력계 : 1.5 MPa (CL 1.5 이상)
2	미세저울	- 최대범위 : (0.000 1~210) g - 분해능: 0.000 1 g
3	표면거칠기 시험기	- 측정범위 : (0.05~40) μm - 파라메타: Ry, Rz, Rp, Tp, Pc, Ra, Rq, Rt
4	3차원측정기	- Measuring Volum: (315×315×160) mm - 배율: 1080 x

다-2. 부동액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어는점 시험기	- 최대온도 : - 70 °C - 정 확 도 : 0.1 °C
2	pH미터	- 측정범위 : 0 ~ 14 - 정 확 도 : 0.001
3	비중	- 정 확 도 : 0.000 1 g/cm ³
4	버니어캘리퍼스	- 정 확 도 : 0.01 mm
5	저울	- 측정범위 : ~ 300 g - 정 확 도 : 0.000 1 g
6	끓는점 시험기	- 측정범위 : (0 ~ 300) °C
7	수분 시험기	- 측정범위 : (0 ~ 100) %
8	금속부식 시험기	- 24홀, 88 °C
9	순환부식 시험기	- AC 220 V, 2 KW, 88 °C~, 60 ± 10 l/min

다-3. 컨트롤암(전·후 로어암, 전·후 어퍼암)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하중시험기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00 mm
2	염수분무 시험기	- 분무실 크기 : (900×600×450) mm - 분무실 온도 : (30~40) °C - 포화조 온도 : (30~70) °C
3	내구성 시험기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25 mm - 주파수 : Max 20 Hz
4	Test Bed	- Bed 크기: (5×4) m - Test Fixture - T-Slot Table

다-4. 배터리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온도계	- 측정오차 : ± 1 °C이상
2	비중계	- 측정오차 : ± 0.002 g/cm ³ 이상
3	전압계 및 전류계	- 7등급 이상의 계기 (충전에 사용하는 계기는 8등급 이상)
4	항온항습기	- 챔버 내부 부피 : 1 000 L - 온도 제어범위 : (- 70 ~ 200) °C, (± 0.3 °C) - 습도 제어범위 : (20 ~ 98) % RH, (± 2 % RH)
5	진동시험기	- Max. Load : 350 kg, - pk~pk : 50.8 mm - Sine force, peak : 17.8 kN - Acceleration : 125.0 gn

다-5. 점화플러그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표면 거칠기 시험기	- 측정범위 : (0.05~40) μm - 파라메타: Ry, Rz, Rp, Tp, Pc, Ra, Rq, Rt
2	토크 시험기	- (0 ~ 150) N · m
3	강도시험기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00 mm - 주파수 : Max 20 Hz - Max. Load : 350 kg,
4	진동시험기	- pk~pk : 50.8 mm - Sine force, peak : 17.8 kN - Acceleration : 125.0 gn
5	누설시험기	
6	항온수조	- (500 ⁺⁵⁰ ₋₂₀) °C
7	전압시험기	- 1 kV ~ 5 kV (펄스전압), DC 12 V
8	내전압시험기	- 30 kV - 전압상승율 : 600 V/ μs - 점화가압펄스 : 50 Hz ~ 60 Hz
9	절연저항계	- (0 ~ OL) Ω
10	부하수명시험기	- 스파크 전압 : (0 ~ 40) kV - 스파크 에너지 : 16 mJ - 스파크율 : (50 ~ 60) Hz
11	열안전성 시험기	- (0 ~ 350) °C

다-6. 브레이크 디스크(전, 후)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표면거칠기 측정기	- 측정범위 : (0.05~40) μm - 파라메타: Ry, Rz, Rp, Tp, Pc, Ra, Rq, Rt
2	3차원측정기	- Measuring Volum: (315×315×160) mm - 배율: 1080
3	회전 밸런스 시험기	- (0 ~ 200) g-cm
4	다이너모 성능시험기	- 브레이크 마찰성능 - 브레이크 캘리퍼 성능 - 브레이크 드럼성능
5	염수분무 시험기	- 분무실 크기 : (900×600×450) mm - 분무실 온도 : (30~40) °C - 포화조 온도 : (30~70) °C

다-7. 엔드볼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각도측정기 (3차원측정기)	- 측정범위 : (0 ~ 360) °
2	회전토크시험기	- Sensor range : (0~200) Nm - Torque Speed : (0~4 000) r/min
3	강도 및 하중시험기 (내구성 시험)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00 mm - 주파수 : Max 20 Hz
4	염수분무 시험기	- 분무실 크기 : (900×600×450) mm - 분무실 온도 : (30~40) °C - 포화조 온도 : (30~70) °C
5	오존열화시험기 챔버	- 온도 제어범위 : (- 70 ~ 200) °C, (± 0.3 °C) - 오존농도 제어가능 : 50 pphm 이상

다-8. 구동벨트(겉벨트·타이밍벨트)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3차원측정기	- Measuring Volume: (315×315×160) mm - 배율: 1080
2	하중시험기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00 mm
3	인장강도 시험기	- Max. 1 000 kN, 300 kN, 250 kN
4	오존열화시험기 챔버	- 온도 제어범위 : (- 70 ~ 200) °C, (± 0.3 °C) - 오존농도 제어가능 : 50 pphm 이상 - 챔버 내부 부피 : 1 000 L
5	항온항습기	- 온도 제어범위 : (- 70 ~ 200) °C, (± 0.3 °C) - 습도 제어범위 : (20 ~ 98) % RH, (± 2 % RH)
6	내구성능시험기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00 mm - 주파수 : Max 20 Hz
7	경도시험기	- 경도하중값 : 55 gf, 855 gf - 침입부 : Needel - 정밀도 : ± 1 grad

다-9. 여과장치

다-9-1. 에어필터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분진 제거능력 시험장치	- 유량 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유속 측정 : 정밀도 ± 5 % 이상 - 압력손실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온도 측정 : 정밀도 ± 2 °C 이상 - 무게 측정 : 정밀도 ± 0.1 % 이상 - 상대습도 측정 : 정밀도 ± 5 % RH 이상 - 압력 측정 : 정밀도 ± 300 Pa 이상 - Particle counter : 정밀도 (0.3 ~ 15) μm - 농도측정 : 정밀도 ± 10 % 이상
2	유해가스 제거능력 시험장치	- 유량 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온도 측정 : 정밀도 ± 0.5 °C 이상 - 무게 측정 : 정밀도 ± 0.1 % 이상 - 상대습도 측정 : 정밀도 ± 1 % RH 이상 - 농도측정 : Toluene, n-Butane : ± 1 % 이상 SO ₂ , O ₃ : ± 3 % 이상
3	연소성시험기	- FMVSS302(미연방 자동차 실내 안전규격) - 분젠버너, 점화 15초

다-9-2. 에어컨필터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분진 제거능력 시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량 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유속 측정 : 정밀도 ± 5 % 이상 - 압력손실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온도 측정 : 정밀도 ± 2 °C 이상 - 무게 측정 : 정밀도 ± 0.1 % 이상 - 상대습도 측정 : 정밀도 ± 5 % RH 이상 - 압력 측정 : 정밀도 ± 300 kPa 이상 - Particle counter : 정밀도 (0.3 ~ 15) μm - 농도측정 : 정밀도 ± 10 % 이상
2	유해가스 제거능력 시험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량 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온도 측정 : 정밀도 ± 0.5 °C 이상 - 무게 측정 : 정밀도 ± 0.1 % 이상 - 상대습도 측정 : 정밀도 ± 1 % RH 이상 - 농도측정 : Toluene, n-Butane : ± 1 % 이상 SO₂, O₃ : ± 3 % 이상
3	연소성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MVSS302(미연방 자동차 실내 안전규격) - 분젠버너, 점화 15초

다-9-3. 오일필터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내압시험기, 임펠스 내구 시험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력 측정 : 정밀도 ± 300 kPa 이상 - 유량 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압력손실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가압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Controller
2	진동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 Load : 350 kg, - pk~pk : 50.8 mm - Sine force, peak : 17.8 kN - Acceleration : 125.0 gn

다-9-4. 연료필터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청결도 시험장비, 필터의 차압시험 장비, 수동 공급용 시험장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압력 측정 : 정밀도 ± 300 kPa 이상 - 유량 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압력손실측정 : 정밀도 ± 2 % 이상 - 온도 측정 : 정밀도 ± 2 °C 이상 - 가압펌프, 진공펌프, 솔레노이드 밸브, Controller
2	진동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x. Load : 350 kg, - pk~pk : 50.8 mm - Sine force, peak : 17.8 kN - Acceleration : 125.0 gn
6	피로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츄에이터 : 10 kN, 25 kN, 50 kN - 분해능 : 0.1 N - Displacement : ± 100 mm

다-10. 오일

다-10-1. 엔진오일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인화점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온도 : 400 °C - 정확도 : 1 °C
2	저온 걸보기 점도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cosity range : 1,000 ~ 13,000 cP - Temperature range : -5°C ~ -30°C
3	자동동점도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범위 : 0.5 ~ 5 000 mm²/s - 최대온도 : 150 °C
4	유동점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범위 : (0 ~ -70) °C - Accuracy : 0.1 °C
5	산화안정도 시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조건 : (165.5±0.5) °C, (1300±15) r/min
6	전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사용온도 : 1,200 °C 이상
7	저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범위 : ~ 300 g - 정 확 도 : 0.0001 g
8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 분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도 : 0.0001 mg/kg - 측정과장범위 : (163~782) nm
9	전알칼리가 분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도 : 0.001 mg KOH/g
10	기포성 분석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온도 : 24 °C, 93.5 °C, 후 24 °C

다-10-2. 미션오일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인화점 시험기	- 최대온도 : 400 ℃ - 정확도 : 1 ℃
2	자동동점도 시험기	- 측정범위 : 0.5 ~ 5 000 mm ² /s - 최대온도 : 150 ℃
3	브룩필드점도 시험기	- 측정범위 : (100 ~ 13,000,000) mPa · s
4	유동점 시험기	- 시험범위 : (0 ~ - 70) ℃ - Accuracy : 0.1 ℃
5	동관부식 시험기	- 시험범위 : (0 ~ 100) ℃
6	방청성능시험기	- (1000±50) r/min, (60±1)℃
7	기포성 분석기	- 측정온도 : 24 ℃, 93.5 ℃, 후 24 ℃
8	산화안정도 시험기	- 시험조건 : 150 ℃, (1300±15) r/min

다-10-3. 기어오일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자동동점도 시험기	- 측정범위 : 0.5 ~ 5 000 mm ² /s - 최대온도 : 150 ℃
2	브룩필드점도 시험기	- 측정범위 : (100 ~ 13,000,000) mPa · s
3	인화점 시험기	- 최대온도 : 400 ℃ - 정확도 : 1 ℃
4	유동점 시험기	- 시험범위 : (0 ~ - 70) ℃ - Accuracy : 0.1 ℃
5	동관부식 시험기	- 시험범위 : (0 ~ 100) ℃
6	기포성 분석기	- 측정온도 : 24 ℃, 93.5 ℃, 후 24 ℃

다-11. 워셔액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어는점 시험기	- 최대온도 : - 70 ℃ - 정 확 도 : 0.1 ℃
2	pH미터	- 측정범위 : 0 ~ 14 - 정 확 도 : 0.001
3	세척성 시험기	- 유리, 와이퍼블레이드, 세정액탱크, 분사노즐, 도출용 펌프
4	오븐	- 측정범위 : ~ 250 ℃
5	저울	- 측정범위 : ~ 300 g - 정 확 도 : 0.0001 g
6	접촉각 시험기	- 측정범위 : (0 ~ 180)0
7	도막경도시험기	- 워셔액의 도막 경도 시험
8	저온배스	- 최대온도 : - 70 ℃ - 정 확 도 : 0.1 ℃
9	인화점 시험기	- 최대온도 : ~ 400 ℃ - 정확도 : 0.5 ℃

다-12. 와이퍼블레이드

구분	시험 장비	장비 목적 및 성능
1	푸쉬풀 게이지	- 최대범위 : (1~300) N - 분해능: 1 N
2	염수분무 시험기	- 분무실 크기 : (900×600×450)mm - 분무실 온도 : (30~40) ℃ - 포화존 온도 : (30~70) ℃
3	내구성 시험기	- 모터 : 속도조절 (Min. 45 rpm 이상) - 살수 노즐 : 800 ml/min 이상
4	유량 측정기	- 측정범위 : (0~25) L/min - 분해능 : 0.001 L - 측정범위 : (0~60) kg - 분해능 : 10 g

서류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배점	인증 기준
서류 심사	1. 기업경영(30)		
	(1) 기업 신용평가 등급	5	
	a.신용평가 등급이 A이상인 경우	(5)	
	b.신용평가 등급이 B이상인 경우	(4)	
	c.신용평가 등급이 C이상인 경우	(3)	
	d.신용평가 등급이 D또는R인 경우	(2)	
	e.해외업체 등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상이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1)	
	f.관련 서류 미제출	(0)	
	(2) 연구개발 조직·인력 및 연구개발비 투자	5	
	a.연구개발 조직·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이익률의 3%이상인 경우	(5)	
	b.연구개발 조직·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이익률의 1%이상인 경우	(3)	
	c.연구개발 조직·인력이 실제로 존재가 불명확하고 연구개발비 투자가 기업이익률의 1% 미만일 경우	(1)	
	d.관련 서류 미제출	(0)	
	(3) 품질 및 생산관리능력	20	
	a.품질 및 생산관리조직이 실제로 존재하고 해당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20)	80점 이상
b.품질 및 생산관리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나 해당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이 미흡하고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15)		
c.품질 및 생산관리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나 해당 관리 시스템의 체계적 운영과 재고관리가 미흡한 경우	(10)		
d.품질 및 생산관리조직의 운영, 관리 시스템, 재고관리 모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5)		
e.관련서류 미제출	(0)		
2. 제품 우수성(45)			
(1) 제조 기술수준	15		
a.제조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며 대체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설비를 모두 갖추어 놓고 관련 타 기관 인증을 받은 경우	(15)		
b.제조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며 대체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설비를 80% 수준으로 갖추어 놓은 경우	(10)		
c.제조 관리 시스템이 존재하며 대체부품 제조를 위한 제조설비를 50%이하로 갖추어 놓은 경우	(5)		
d. 관련서류 미제출	(0)		
(2) 생산기술축적정도	10		

a.과거 생산 실적이 존재하고 생산 기술력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b.과거 생산 실적 및 생산 기술력을 증명할 자료가 미흡한 경우	(5)
c. 관련 서류 미제출	(0)
(3) 기술의 혁신성 및 발전 가능성	10
a.기술의 혁신성 및 발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b.기술의 혁신성 및 발전 가능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	(5)
c.관련 서류 미제출	(0)
(4) 기술대비 가격 경쟁력	5
a.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동급대비 시장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자료를 확인한 경우	(5)
b.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동급대비 시장이 가격이 저렴하다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	(3)
c.관련 서류 미제출	(0)
(5) 기술 특허 보유여부	5
a. 기술관련 특허증을 제출한 경우	(5)
b. 관련서류 미제출	(0)
3. 소비자 보호(25)	
(1) 제조물배상보험가입	10
a.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 하고 대체부품 배상보상에 문제 없을 경우	(10)
b.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명서류를 제출 하였으나 대체부품 배상보상에 미흡할 경우	(5)
c. 관련서류 미제출	(0)
(2) 소비자 민원 전담조직 및 인력	5
a.소비자 민원 전담조직 및 인력이 존재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5)
b.관련서류 미제출	(0)
(3) 제품보증서 사후관리 여부	10
a.제품보증서 부착 및 사후 A/S 가능여부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10)
b.제품보증서 부착 및 사후 A/S 가능여부를 증명하는 자료가 미흡한 경우	(5)
c.관련서류 미제출	(0)

[별표3]

공장심사기준

합격기준 : 80점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1. 일반 관리 (20)	1) 경영자의 열의도 (10)	가.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품질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시키고 열의가 있는 경우	(2)	
		b. 교육을 이수시키지는 않았으나 열의가 있는 경우	(1)	
		c. 품질관리에 대한 열의가 미흡	(0)	
		나. 품질관리매뉴얼(QM)이 적절하게 수립·운영되는지?	2	
		a. QM이 적절하고 매년 재검토 기록이 있는 경우	(2)	
	b. QM이 적절하지만 최근 재검토 기록이 없는 경우	(1)		
	c. QM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0)	ISO/TS 인정항목	
	다. 경영자 기본방침이 설정되어 있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기본방침이 QM에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경우	(2)		
b. QM에 기본방침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1)			
c. QM에 기본방침이 없는 경우	(0)			
라. 사내표준화 및 QM 도입확산에 노력하고 있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품질관리책임자가 적절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경우	(2)			
b. 품질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으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1)			
c. 품질관리책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0)			
마. 품질관리책임자의 권한이 적정한지?	2	ISO/TS 인정항목		
a. 제품결함 등에 따라 생산중지, 공급중단에 대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경우	(2)			
b. 제품결함 등에 대한 권한이 미흡한 경우	(1)			
c. 제품결함 등에 대한 권한이 없는 경우	(0)			
2) 작업환경 (10)	가. 작업장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2		
		a. 작업장의 원부자재 및 완제품 구분을 할 수 있게 정리된 경우		(2)
		b. 작업장의 원부자재와 완제품이 구분이 되어도 청결상태가 미흡한 경우		(1)
		c. 작업장 청결상태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나. 작업장의 조명 및 환기장치 등은 양호한가?	2		
		a. 조명 및 환기장치가 양호한 경우	(2)		
		b. 조명 및 환기장치가 다소 미흡한 경우	(1)		
		c. 조명 및 환기장치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 기자재가 사용하기 쉽게 배치되어 있는가?	2		
		a. 공구 등 기자재 배치가 양호한 경우	(2)		
		b. 다소 미흡한 경우	(1)		
		c.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라. 제조설비에 대한 점검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규정이 제정되어 있으며, 기록이 적정한 경우	(2)		
b. 규정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1)				
c. 규정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마. 안전관리에 대한 각종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2)				
b. 필요시에만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1)				
c.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2. 품질 관리 (50)	1) 품질관리 일 반 (10)	가. 품질관리조직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품질관리조직이 적정한 경우	(2)		
		b. 품질관리조직이 미흡한 경우	(1)		
		c. 품질관리조직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나. 품질관리 기능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원이 확보되어 있는가?	1		
		a. 적절한 경우	(1)		
		b. 적절하지 못한 경우	(0)		
		다. 품질검사부서가 기능상 독립되어 있는가?	1		ISO/TS 인정항목
		a. 적절한 경우	(1)		
		b. 적절하지 못한 경우	(0)		
라. 자재 및 주요부품에 대한 규격이 있는가?	2	ISO/TS 인정항목			
a. 자재 및 주요부품에 대한 규격이 있으며, 관리가 적정한 경우	(2)				
b. 규격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1)				
c. 규격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마. 제안활동 및 QM교육이 적절히 수행 되고 있는가? a. 적절히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일부만 실시되고 있는 경우 c.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바. 안전관리규정이 적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 a.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적정한 경우 b. 규정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규정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2) 생산검사 설비 및 자재관리 (20)	가. 자재 및 외주회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가? a. 정기적으로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는 경우 b. 실시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나. 자재 및 외주회사에 대한 불량발생기록에 대한 검사 및 관리를 하는가? a. 검사 및 관리기록이 있으며, 불량발생에 대한 해결방안이 적정한 경우 b. 검사 및 관리기록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검사 및 관리기록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다. 자재 및 외주부품에 대한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검사갯수, 빈도, 검사기준, 검사장비 등 검사기준이 적정한 경우 b. 검사기준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검사기준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라. 자재 및 외주부품에 대한 검사가 적정한가? a. 입고일, 샘플링 크기, 검사갯수, 검사결과 등이 포함된 검사기록이 적정한 경우 b. 검사기록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검사기록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마. 자재 및 외주부품에 대한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가? a. 검사결과에 따른 불량품 등에 대한 조치가 적정한 경우 b.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미흡한 경우 c.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 점	비 고
		바. 자재 및 외주부품에 대한 검사결과 표시가 적정한지? a. 검사완료후 검사결과(합격, 불합격)에 다른 표시(라벨, 마크 등)이 적절한 경우 b. 검사결과 표시가 미흡한 경우 c. 검사결과 표시가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사. 부품제조에 사용된 자재(원료)를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가? a. 완제품과 사용자재를 로트단위 또는 제조일 자별로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b. 추적시스템이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추적시스템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ISO/TS 인정항목
		아. 모든 자재(원료)에 대한 재질확인서를 관리하는지? a. 재질확인서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경우 b. 재질확인서를 관리하나, 미흡한 경우 c. 재질확인서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2 (2) (1) (0)	ISO/TS 인정항목
		자. 시험 및 검사설비에 대한 검교정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a. 검교정일자, 주기, 설비 고유번호, 검교정 기준, 담당자 등 적정하게 유지한 경우 b. 일부 미흡한 경우 c. 검교정 기록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차. 검사지그(Fixture)가 적정하게 사용되는가? a. 검사지그에 대한 유지관리 기록이 적정한 경우 b. 일부 미흡한 경우 c. 검사지그 기록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3) 공정관리 (12)	가. 모든 부품에 대한 공정절차 및 사용재료 등 공정도와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 a. 검사갯수, 빈도, 기준 및 검사설비 등이 적정한 경우 b. 공정도 및 검사기준이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c. 공정도 및 검사기준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나. 공정도 및 검사기준이 현장에 비치되어 있는가? a. 최신의 공정도 및 검사기준이 적정하게 비치된 경우 b. 비치되어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비치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p>다. 작업공정중의 육안검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a. 100% 육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2)</p> <p>b. 육안검사를 실시하지만 미흡한 경우 (1)</p> <p>c. 육안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p>라. 용접(또는 접착제) 위치 검사 및 강도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지?</p> <p>a. 검사 및 강도시험을 매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2)</p> <p>b. 검사 및 강도시험을 실시하지만 미흡한 경우 (1)</p> <p>c. 검사 및 강도시험을 실시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p>마. 공정중의 모든 재료 및 부품에 대한 품질상태 표식을 하는지?</p> <p>a. 라벨 또는 표식 등으로 품질상태(합격, 불합격 등)를 적절하게 표시하는 경우 (2)</p> <p>b. 품질상태를 표시하지만 미흡한 경우 (1)</p> <p>c. 품질상태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ISO/TS 인정항목
		<p>바.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p> <p>a. QM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리하고 기록이 적정한 경우 (2)</p> <p>b. QM에 따라 불합격품을 처리하지만 미흡한 경우 (1)</p> <p>c. QM에 따라 처리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ISO/TS 인정항목
4	제품개발 및 관리 (8)	<p>가. 제품개발을 위해 필요한 해당 OEM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는가?</p> <p>a. 해당 OEM부품을 구입하여 활용하였다는 근거자료(구입전표 등)가 있는 경우 (2)</p> <p>b. 일부 기록만 있는 경우 (1)</p> <p>b. 기록이 없는 경우 (0)</p>	2	
		<p>나. 제품개발을 위해 활용한 해당 OEM부품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a. OEM부품에 대한 표식 및 보관이 적절한 경우 (2)</p> <p>b. OEM부품에 대한 표식 및 보관이 미흡한 경우 (1)</p> <p>c. OEM부품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0)</p>	2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p>다. 개발 단계별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평가가 실시되고 있는가?</p> <p>a. 단계별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p> <p>b. 다소 미흡한 경우 (1)</p> <p>c.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ISO/TS 인정항목
		<p>라. 모든 부품에 대한 완제품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는가?</p> <p>a. 검사장비, 샘플링 크기, 검사갯수, 합격기준 등 검사기준이 적절한 경우 (2)</p> <p>b. 검사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미흡한 경우 (1)</p> <p>c. 검사기준이 없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3.인증 관리 (15)	1) 인증표시 및 인증시험 관리 (15)	<p>가. 인증표시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p> <p>a. 부품번호, 로트크기 및 번호, 인증표시 등에 대한 관리가 적절한 경우 (3)</p> <p>b. 인증표시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미흡한 경우 (2)</p> <p>c. 인증표시에 대해 관리하고 있으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1)</p> <p>d. 인증표시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0)</p>	3	
		<p>나. 생산설비의 적정온도(오븐 등) 및 컨베이어 속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이루어지는지?</p> <p>a. 일일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고 관리기록이 적절한 경우 (2)</p> <p>b. 모니터링 및 관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1)</p> <p>c. 모니터링을 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p>다. 부품에 대한 품질검사(외관, 재질 등)를 실시하는가?</p> <p>a. 외관검사, 재질검사 등을 실시하고 결과기록이 적절한 경우 (2)</p> <p>b. 품질검사를 실시하지만 미흡한 경우 (1)</p> <p>c.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0)</p>	2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라. 내부식성 시험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가? a. 월 1회 이상 내부식성 시험을 실시하고 관련기록이 적정한 경우 b. 내부식성 시험을 하지만 미흡한 경우 c. 내부식성 시험을 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마. 생산공정에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재질안전데이터 (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보유하고 있는가? a. 모든 재료에 대한 MSDS를 보유한 경우 b. 일부 재료에 대해서만 보유한 경우 c. MSDS를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경우	2 (2) (1) (0)	
		바. 코팅 접착력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가? a. 로트당 1개 이상에 대해 주기적으로 코팅 접착력을 검사하고 관련기록이 적정한 경우 b. 접착력 검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접착력 검사를 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사. 코팅두께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는가? a. 로트당 3개 이상에 대해 주기적으로 두께를 검사하고 관리기록이 적정한 경우 b. 두께검사를 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두께검사를 하지 않거나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4.유통 관리 (15)	1) 소비자 보호체계 (15)	가. 소비자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가 구비되어 있고 그 내용이 적절한가? a.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 전담조직이 업무를 처리하는 등 적정한 경우 b. 규정 및 전담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규정 및 전담조직 없이 불만을 접수, 처리하는 경우 d.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3 (3) (2) (1) (0)	ISO/TS 인정항목

구 분	심사항목	세 부 심 사 항 목	배점	비고
		나. 소비자 불만처리 실적이 있고 그 처리내용이 양호한가? a. 불만처리실적이 있고 그 처리내용이 양호한 경우 b. 처리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c. 처리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경우 d. 처리내용이 없으며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3 (3) (2) (1) (0)	
		다. 소비자나 대리점등을 통하여 시장정보를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있는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c. 상당히 미흡한 경우 d. 시장정보를 관리하지 않는 경우	3 (3) (2) (1) (0)	ISO/TS 인정항목
		라. 수집내용을 분석검토하여 활용하고 있는가? a. 활용하고 있으며 양호한 경우 b. 활용하고 있으나 미흡한 경우 c. 활용하지 않는 경우	2 (2) (1) (0)	
		마. 사규 등에 사용설명서나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가? a. 사규에 명시된 경우 b. 사용설명서만 있는 경우 c. 사규 및 사용설명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	2 (2) (1) (0)	
		바. 품질표시나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명확하고 적절하여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가? a. 양호한 경우 b. 다소 미흡한 경우 c. 상당히 미흡한 경우	2 (2) (1) (0)	